

#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 투쟁계획

공공운수노조 임시대의원회 (사전 간담회)

2019.4.18.



1. 국회에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노동개약 입법이 시도될 경우,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구체적인 파업 일시와 방법은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 4~5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약과 함께, 경사노위 야합을 거쳐 노조법 개약 시도가 예상되므로,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다.  
(4.4.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정)
2. 모든 산하조직은 자체 회의 결의를 거쳐 공공운수노조 대의원회가 결정한 지침에 따라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한다.
3. 정기대의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7월, 11월 투쟁은 2020년 총선까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약 저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물론 노동개약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 안전 일자리 확충 요구를 포함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전조직적 투쟁으로 전개한다.

- 탄력근로제 확대 개약안
  - 2019.2.19. 경사노위에서 한국노총-경총-정부 탄력근로제 개약안 야합
  - 3.7.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이후 파행 중
  - 3.8.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입법 발의
  - 3.13. 경사노위는 (본회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공식 입법 요청
  - 4.3.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심의 중 중단, 차기 회의로 넘김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약 법안도 함께 심의 중
- 노동기본권 파괴 노조법 개약
  - 2018.11.30. 경사노위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1차) 발표
  - 12.28.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1차) 입법 발의
  - 2019.1.15.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안 제출(전면적인 노동기본권 파괴안)
  - 3.15. 경사노위 기자간담회, 3월말까지 노사정 합의 제안
  - (현재)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협의 계속 진행 중, 노사정 야합→ 임시국회 개약법안 발의 가능성 높음
- 4.8~5.7.까지 임시국회 개최 : 개약안이 곧장 이어서 다루어질 전망

- 탄력근로제란?
  -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제도. 하루,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더 긴 특정 기간(최대 6개월)을 단위로 노동시간 평균으로 노동시간을 규제
- **(개악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특정 의무 면제가 핵심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6개월로 확대 (6+6개월 방식으로 1년 짜리 효과)
  - 임금보전 하도록 하지만 노사 합의로 변경 가능
  - 업무량 급증 시 근로자대표와 '합의' 아닌 '협의'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사용자는 전날까지 근로일별 시간 일방 통보하면 무방
  -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하지만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안 할 수도 있음
  - 근로시간도 '근로일'이 아닌 '주별'로 정함
  - 단위기간 확대와 규제 완화로 "활용성"이 높아져 → 많은 사용자들이 새롭게 도입 시도 예상
  - 노조가 없거나 약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마음대로 장시간 노동 결정
-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 왜 모든 노조가 나서야하는가?
  -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으로서, 특히 미조직 노동자에게 직격탄이 되는 탄력근로제 저지 투쟁을 함께 해야함
  - 이후 국회에서 노동기본권 파괴 노조법 개악안 저지 투쟁의 전초전 성격

- 노조법 개악, 노총-경총 야합 노사정합의 추진 중
  - 애초 ILO협약 비준 위해 논의 시작되었으나, 노조법 개악논의로 변질
    - 사용자들은 ILO핵심협약 비준하려면 그 '대가로' 노조할 권리,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법 개악 병행 주장
    - 정부와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협상하며 이를 '거래하는 구조를 사실상 인정
    - 이미 2018.12.28. 상정된 1차 법안도 사업장 내 산별노조 활동 제약하는 등 독소조항 포함
- 노동계 요구 : ILO핵심협약 선비준, ILO핵심협약 취지에 따른 노조법 개정
  -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혁
  - 노조법2조 개정(특고/용역 노동자 기본권), 공무원/교사 등 노동기본권 보장
- 사용자 요구 : 노조할권리, 파업권 파괴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 점거 금지 → 파업 무력화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노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신설)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4년) → 복수노조 경우 최장5년간 교섭권 제약
  - 쟁의행위 찬반투표 유효기간 제한 및 동일사안 재투표 금지 등 → 파업을 어렵게
  - 이러한 사용자 요구 중 일부는 수용해야한다는 것이 경사노위(정부여당) 입장
- 개악안이 일부라도 통과되면 노조의 교섭-투쟁을 전면적으로 제약  
→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력 투쟁으로 대응해야.

- 노동법 개악저지 4월 총파업·총력투쟁 특별결의
  1.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제 개악에 맞서 4월 총력투쟁
  2. 교섭권·파업권 개악이 공식 입법논의에 돌입할 경우 총파업
  3.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전조직적 투쟁 전개
- 4월 이후 주요 민주노총 투쟁 계획
  - (7월) 비정규직 철폐 및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노동소득 확대 총파업
  - (9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하반기 투쟁 결의)
  - (11월)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사회적 총파업
    - 재벌개혁 외에도 사회보장 확대, 노동법 개정 요구 등 포함

모든 노동자를 위해, 우리 자신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민주노총 최대 산별,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서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 투쟁을 결의합니다.